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

[도병두 의원 발의]

의안번호 2646

발의일자 : 2024. 11. 12.

발 의 자 : 도병두 의원

찬 성 자 : 고성미 의원

엄샛별 의원

1. 제안이유

생활체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, 금천구 민의 건강한 신체활동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생활체육 활 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체육지도자의 처 우개선 및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
나. 구청장의 책무 및 실태조사(안 제3조 및 제5조)

다. 시행계획 수립과 처우개선 및 지원사업(안 제6조 및 제7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 「생활체육진흥법」 제5조
- 2)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2조
- 나. 예산조치: 필요시 예산조치
- 다. 기 타
 - 1) 입법예고: 2024. 11. 15. ~ 2024. 11. 21.

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생활체육"이란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을 말한다.
- 2. "생활체육지도자"란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서울특별시 금천구 내에서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.
- 제3조(구청장의 책무)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하

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5조(실태조사) 구청장은 생활체육 활성화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 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제6조(시행계획의 수립) 구청장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 후생 증진을 위하여 「생활체육진흥법」 제6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제7조(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사업) ① 구청장은 생활체육지 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- 1.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
- 2. 생활체육지도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훈련 및 교육 사업
- 3. 생활체육지도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
- 4. 생활체육지도자의 보수체계 및 처우개선을 위한 조사·연구
- 5.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 사업
- 6. 그 밖에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전문기관이나 단체

에 위탁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8조(표창) 구청장과 금천구의회 의장은 생활체육진흥에 공적이 있는 생활체육지도자, 법인 및 단체 등에게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 례」 및 「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표창 조례」에 따라 표창할 수 있 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 법 령

□ 「생활체육진흥법」

[시행 2024. 2. 9.] [법률 제19593호, 2023. 8. 8., 일부개정]

제5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□ 「국민체육진흥법」

[시행 2024, 10, 22.] [법률 제20490호, 2024, 10, 22., 일부개정]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체육"이란 운동경기·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.
- 2. "전문체육" 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.
- 3. "생활체육"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.
- 4. "선수" 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.
- 4의2. "국가대표선수" 란 대한체육회,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경기단체가 국 제경기대회(친선경기대회는 제외한다)에 우리나라의 대표로 파견하기 위하여 선발·확정한 사람을 말한다.
- 5. "학교"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 및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.
- 6. "체육지도자" 란 학교·직장·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.
- 가. 스포츠지도사
- 나. 건강운동관리사
- 다. 장애인스포츠지도사
- 라. 유소년스포츠지도사
- 마. 노인스포츠지도사